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보

선람	기관의 장

제601호

2007년 9월 28일 금요일

차 례

조 례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6호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3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7호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 ···· 4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8호 인천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· 5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6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0호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7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8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2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9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3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 ····· 10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4호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 · 복권판매대,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11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5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 ·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12

회람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: 기획홍보실
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6호 인천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13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7호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· 14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8호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· 15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9호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16
○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10호 인천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·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····· 17

훈 령

○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53호 인천광역시서구정원 외 상근인력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····· 18

고 시

○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42호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,녹지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····· 20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825호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서(초안) 공람공고 ····· 21

조 례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6호

인천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지방자치법 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36조"를 "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41조"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제2호 중 법 "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"을 "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"으로, 하고, "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"을 "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"으로 한다. 같은조 같은항 제3호 중 "법 제137조의 규정" 을 "법 제146조의 규정"으로 하고,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"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"을 "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"으로 하고,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중 "제79조2" 를 "제17조 제1항"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"법 제36조제3항"을 "법 제41조 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7호

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

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8호

인천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인천광역시서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"를 "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"로 한다.
제1조 중 "지방재정법 제116조"를 "「지방재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95조"로 한다.
제4조 중 "110만원이상"을 "1,000만원이상"으로 한다.
제7조 제1항 중 "지방재정법 제115조"를 "법 제94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899호
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주민등록법」 "제20조 "를 「주민등록법」 "제36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0호

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"를 "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"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"을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항"으로 하고, "인천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"를 "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 제3항 중 "민자유치사업"을 "민간투자사업"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1호, 제2호, 제5호 중 "민자유치사업"을 "민간투자사업"으로 하고, 같은조 제2호 중 "민자유치시설사업" 을 "민자투자시설사업" 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 중 "자치행정과장"을 "재무과장"으로 하고, "경영관리계장" 을 "재산관리팀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1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지방자치법 "제127조 및 제130조"를 「지방자치법」 "제136조 및 제139조"로 한다.
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①구청장은 썰매장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7조,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21조 규정에 의거 썰매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허가·위탁할 수 있다.
②수익허가 시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내지 제26조,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」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.
제15조제3항의 "위탁·임대"를 "수익허가·위탁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2호

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"를 "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" 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자치법 제133조" 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"로 한다.
제2조제2항 중 "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"을 "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 항"으로 한다.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3호

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

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①**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**(경과조치)** 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·운용되어온 자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입하여 사회복지 증진 재원으로 운용한다.

③**(다른 조례의 개정)**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**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**(적용 등)**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차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

2007년 9월 28일

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04호

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대,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판매,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"를 "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장애인복지법 제38조, 노인복지법 제25조, 모자복지법 제15조"를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「모·부자복지법」 제15조"로 하고, "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의"를 "「모·부자복지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·부자가정의"로 한다.
제4조 제3호 중 "모자가정등"을 "모·부자가정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